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

가. 제·개정 이유

- ‘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’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상위급 회의체로서, 국정 방향 설정 및 범정부 정책 조정·수립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, 회의의 기능과 성격에 부합하도록 회의 명칭을 ‘국가정책 조정회의’로 변경하려는 것임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명칭 변경(안 제1조, 제2조)
 - 회의체 기능 및 성격 명확화를 위해 ‘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’를 ‘국가정책조정회의’로 변경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회의의 기능 및 성격에 부합하는 회의 운영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